
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(개정)

1 요청사유 (금융혁신과, 2023.4.28.)

- (개정 내용) 온투업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고, 부동산한도(부동산PF대출, 부동산담보대출)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(다만, 부동산PF대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유지)
 - 「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」(’22.12.20일)에 따른 후속조치
- (신청사항)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, 새로운 규제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내용의 성질상 위 규정 개정의 사전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

2 검토 내용

- 동 개정내용은 온투업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
 - 새로운 규제의 도입·폐지가 아니며 입법내용의 성질상 사전예고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 - ※ ‘금융위 법제업무 운영규정’ 제20조 등에 따라 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단축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- 사전예고 기간 : ‘23. 4. 28일 ~ 5. 18일 (20일간)